

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2.8.3>

사회복지시설 설치·운영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		접수일						처리기간 20일			
신고인 (대표자)	성명						법인명					
	주소						전화번호					
시설 개요	명칭						사업의 종류					
	소재지						전화번호					
	시설장의 성명						생년월일					
	설치연월일						입소정원 명					
시설 설비	거		실	사		무	실	상		담	실	
	m ²			m ²				m ²				
	도		실	오		락	실	조		리	실	
	m ²			m ²				m ²				
	목		실	세		탁	장	건		조	장	
	m ²			m ²				m ²				
	변		수	직		업	훈	련	실	강	의	실
m ²			m ²					m ²				
자		원	봉	사	자	실	운	동	장	대	지	
m ²					m ²				m ²			
기타											m ²	
직원	총인원		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		예산	수입총액			지출총액			
	명		명									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.

이
이
이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) 3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. 시설의 평면도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)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물등기부 등본 3. 토지등기부 등본	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